

리무어 시
주거용 수도서비스의 중단에 관한 방침

1. 목적

이 방침은 “수도중단 보호법”으로 알려진 상원법안 998 호를 준수하기 위해 제정하고 2018 년 9 월 28 일에 주지사가 승인했다 (캘리포니아 보건안전법 116900 항). 이 방침은 리모어 웹사이트에 있어야 한다. 이 방침의 조항에 의해 미납으로 인한 수도서비스의 중단을 피하는 방법을 의논하려면 시의 공과금 고지부로 (559) 924-6744 내선번호. 715 으로 전화하십시오.

2. 발효일

이 방침은 2020 년 2 월 1 일부터 유효합니다.

3. 출판한 언어

이 방침과 방침에 따른 통지서는 민사법 1632 항에 나온 언어인 스페인어, 중국어, 타갈로그, 베트남어, 한국어, 시의 수도공급지역에 사는 최소한 10 퍼센트 주민들이 말하는 언어와 영어로 사용하고 출판한다.

4. 주거용 수도서비스를 중단하기 전에 필수적인 조건

- A. 고객이 적어도 60 일동안 요금을 납부하지 않을 때까지 시에서 미납으로 주거용 수도서비스를 중단하지 않는다. 미납으로 주거용 수도서비스를 중단하기 전에 칠영업일까지, 시는 계정에 이름이 나온 고객에게 전화나 우편으로 연락한다.
- B. (A)관에 따라서 시는 계정에 이름이 나온 고객에게 전화로 연락할 때, 공무원은 고객에게 이 방침서를 준다. 시 공무원은 미납으로 주거용 수도서비스를 중단하는 것을 피하는 방법을 의논한다. 예를 들면 별도납부약정, 납부 연기, 최소납부액, 미납요금의 분할납부 신청 절차, 고지서의 재고와 항소 신청이다.
- C. (A)관에 따라서 시는 계정에 이름이 나온 고객에게 통지서로 연락할 때, 고객에게 기록의 주소로 요금미납과 임박한 중단 통지서를 보낸다. 고객의 주소가 주거용 수도 서비스를 공급받는 건물 주소가 아닌 경우, 통지서는 주거용 수도 서비스를 받는 주소로 보내야 하며, “현재 입주자” 앞으로 보낸다. 통지서에 분명하고 똑똑히 읽을 수 있는 형태로 다음 내용이 나와있어야 한다.
 - (i) 고객의 이름과 주소
 - (ii) 체납된 요금
 - (iii) 부장의 재량으로 고지서가 체납된 날짜로부터 60 일까지 주거용 수도서비스의 중단을 피하기 위한 요금 납부일이나 납부 약정일
 - (iv) 체납요금의 납부 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절차의 설명
 - (v) 고지서의 재고와 항소를 신청하는 절차의 설명
 - (vi) 고객이 체납된 주거용 수도요금의 분할납부 등으로 요금 납부 연기, 인하, 별도납부일정을 신청하는 절차의 설명
 - (vii) 시의 전화번호와 시의 방침이 있는 웹사이트 링크

5. 성실하게 통지하는 규정

- A. 시는 주거지의 고객이나 성인과 연락하지 못하고, 우편으로 보낸 통지서가 배달이 불가능하여 돌아온 경우, 시에서 미납으로 임박한 주거용 수도서비스 중단 통지서와 시의 주거용 수도서비스의 중단 방침을 주거지에 찾아가서 두고 오거나, 눈에 잘 보이는 장소에 두는 방법을 마련하여 성실히 이행할 것이다.

- B. 고객이 고지서의 재고나 항소를 제기하려면, 고객은 요금납부일까지 시에 연락하고 시에서 조사한다. 만일 조사하고 고객이 결과에 불복하면, 고객은 시 보조 부장의 재고를 받고 후속으로 시 의회에 항소한다. 시는 시의회가 회의하기 최소한 칠(7)일까지 항소 시간과 장소가 나온 통지서를 보낸다. 시의회의 판결은 최종적이다. 항소하는 동안 시는 주거용 수도서비스를 중단하지 못한다.

6. 주거용 수도서비스의 중단을 금지하는 상황

- A. 다음 상황이 모두 충족될 경우 시는 주거용 수도 서비스를 중단하지 못한다.
- (I) 복지제도법 14088 조항의 (b)관 (1)문단 (A)하부분단에 규정된 약관에 따라서 고객이나 고객의 세입자가 수도 공급 중단이 생명에 위협을 주거나 주거용 수도서비스를 받는 건물의 거주자가 건강과 안전에 심각한 위협을 받는다고 주치의로부터 인증서를 받아 시에 제출한다.
 - (II) 고객은 수도국의 정상적인 정산주기에서 수도요금을 납부할 경제적 능력이 없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소비자의 가족이 캘웁스, 캘프레시, 일반 보조금, 메디칼, SSI/주정부 추가 보조금 프로그램, 혹은 여성, 신생아, 아동을 위한 캘리포니아 특수 영양보조 프로그램을 현재 받고 있으면 경제적으로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여겨진다. 또는 고객이 연간 가구소득이 연방정부 빈곤 수치의 200% 이하라고 신고한 경우이다.
 - (III) 소비자는 체납요금에 대한 할부상환 약정, 별도납부 일정, 요금납부의 연기나 인하 약정을 맺을 의사가 있다.
- B. 위에 나온 조건을 전부 충족하면, 시는 고객에게 다음 중 한 가지 이상을 제안한다.
- (i) 미납요금의 할부상환
 - (ii) 별도납부약정 참여
 - (iii) 세납자에게 추가로 요금을 부과하지 않고 미납요금을 일부 인하 또는 전액 인하
 - (iv) 요금납부 일시적 연기
- C. 6.B 문단에서 규정된 요금납부 방법을 고객이 이행하는지 시 보조부장이 결정할 권한이 있으며 미납요금 잔액을 12 개월까지 납부하는 옵션의 한도를 정한다. 일반자금 수익으로 요금인하를 충당하는 것을 시의회가 허가하고 수도자금 예산을 그러한 목적을 위해 할당하는 경우, 시 보조부장은 미납요금의 일부 인하 또는 전액 인하를 허가한다.
- D. 시정부는 최종 공급중단 의도통지서를 소비자의 주거지에 게시하고 최소한 5 영업일이 지난 다음 소비자의 건물에 수도공급을 중단한다.
- (I) 고객은 체납요금의 분할납부약정, 별도납부약정, 또는 납부 연기나 인하 약정을 60 일 이상 준수하지 않는다.
 - (II) 고객은 체납 요금의 분할납부약정, 별도납부약정, 또는 연기나 인하 약정을 맺은 기간동안, 현재 주거용 수도 요금을 60 일 이상 납부하지 않는다.

7. 서비스 복구

- A. 시에서 미납으로 주거용 서비스를 중단한 경우, 주거용 수도서비스를 복구하는 방법을 고객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가족수입이 연방정부 빈곤수치의 200% 이하라고 증명한 주거용 고객에게, 시에서 다음과 같이 두가지를 하게 된다.
 - (I) 정상 근무시간에 재연결한 서비스 수수료는 오십(\$50)달러를 초과하면 안되며, 그보다 적은 금액은 실질적인 재연결 비용을 초과하면 안된다. 근무시간이 아닌 시간에 재연결한 서비스 수수료는 백오십(\$150) 달러를 초과하면 안되며, 그보다 적은 금액은 실질적인 재연결 비용을 초과하면 안된다. 근무시간에 재연결하면 최고 \$50 이고 비근무시간은 최고 \$150 이며 2021년 1월 1일부터 시작하는 소비자 물가 수치의 변동에 따른 연간 수정액을 따른다. 시는 소비자 물가 수치의 인상액을 결정하기 위해 로스앤젤레스와 샌프란시스코 지역의 평균을 사용한다.
 - (II) 시정부는 12개월에 한번씩 체납고지서의 이자를 면제한다.
- B. 가족원이 캘웁스, 캘프레시, 일반 보조금, 메디칼, 보조보장소득/ 주정부 추가 보조금 프로그램, 여성, 신생아, 아동을 위한 캘리포니아 특수 영양보조 프로그램 등 정부 보조금의 현재 수혜자라고 증명하여 경제적으로 납부할 형편이 안된다고 증명한다. 혹은 고객은 가구 소득이 연방정부 빈곤 수치의 200% 이하라고 신고한다.

8. 집주인-세입자 관계에 대한 서비스

- A. 시에서 건물이 분리된 단독주택, 다세대 거주용 건물, 모빌홈의 주거용 세입자에게 주거용 수도서비스를 개별적으로 계량하여 공급하고, 주거지, 구조물, 또는 공원의 집주인, 관리인, 운영자가 기록상 고객이면, 시정부는 계정이 체납상태이며 서비스를 중단하기 최소한 10일 전에 통지서로 주거용 입주자에게 알리려는 성실한 노력을 해야 한다. 주거용 세입자가 체납된 계정에 연체료를 납부하지 않더라도 서비스를 청구 받는 고객이 될 수 있는 권리를 통지서로 알려야 한다.
- B. 시는 주거용 입주자가 서비스 약정에 동의하고 시정부의 법, 조례안, 결의안, 규칙, 규정을 충족하지 않는한, 시정부는 주거용 입주자가 서비스를 사용하게 할 의무는 없다. 하지만 주거용 입주자 한 명이나 한 명 이상이 시정부가 만족할 만큼 계정의 추후 요금을 납부할 책임을 인수하는 경우, 예를 들면 180달러의 보증금을 납부하고 시의 서비스 신청서를 작성하는 것을 포함하나 국한되지 않는 방법으로, 시의 보조부장이나 대리인이 주거용 신청인이 서비스 약관을 충족하는 점을 시에서 만족하는지 평가하며, 또는 시정부의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거주용 입주자에게 서비스를 선별적으로 중단할 물리적인 방법이 있는 경우, 시에서 서비스 약관을 충족한 주거용 입주자만 서비스를 사용하게 한다.

9. 보고할 의무

시는 시의 웹사이트와 주 수도 자원통제국에 요금 미납으로 인하여 주거용 서비스가 중단된 통계를 매년 보고해야 한다.

10. 이 방침의 제한

이 방침에서 분명하게 규정된 사항 외에 다른 이유로 예를 들면 고객의 무허가 행위로 인한 서비스의 종료를 포함하나 국한되지 않는 경우에 고객에게 서비스를 종료하는 시의 권한을 구속하고, 제한하고, 방해하지 않는다.

11. 고객은 주거용 수도서비스 고지서에 정해진 금액을 항소해도 된다.

- A. 고객은 시에서 정한 고지서나 요금을 항소하는 권리가 있다. 요금이나 고지서를 발급하고 십오(15)일까지 시의 사무실에 항소하는 문서를 작성하고 접수해야 한다. 시 보조 부장이 항소를 심리하게 된다. 항소하는 동안 시정부가 소비자에게 수도 서비스를 중단할 수 없다.